

第45回 - 第8次

| | |
|-------|-------------|
| 의안번호 | 제 73 호 |
| 의결년월일 | 1995. 12. 5 |

논산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12. 5.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11월 24일 논산군수
나. 회부일자 : 1995년 11월 25일
다. 상정일자 : 1995년 12월 5일 제45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지적과장 이정성)

가.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제1항 및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신청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지가로 산정함.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제기할 경우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관할법원에 통보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몇불임 검토보고서와 같음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김용희 의원)
 - 지금까지 과태료는 어디에서 부과 징수했는지 ?
- 답변 (이정성 지적과장)
 -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 과태료 부과 징수코자 하는 사항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재적위원 9인 전원 일치 의결

덧붙임 : 논산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마침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3호

1995. 12. 2.

| | | | |
|----------|---------------------------------|--------|---------------|
| 건명 | 논산군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 |
| 제안 및 제출자 | 논 산 군 수 | 제출 년월일 | 1995. 11. 24. |
| 소관위원회 | 총무위원회 | 회부 년월일 | 1995. 11. 25. |

검 토 내 용

 조례제안 이유.

1. 토지거래허가(신고)제 및 유휴지제도와 관련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에 있었음.
 가. 본조례 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1) 토지가격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하는 사유로서는, 토지가격과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액 토지소유자가 고액 토지소유자보다 과태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가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액 토지소유자와 소액 토지소유자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 2)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달리하는 사유로는,
 -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 (유휴지 결정후 이용계획서등 미제출 또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미이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며.
 - 기간을 달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법정기간이 지났더라도 토지를 이용·개발한다면 과태료를 적게 납부도록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이 있었음.

□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통보하도록 하였고,
- 과태료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개별지가로 산정하며,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였음.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논산군에 귀속토록 하였음.

□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는,

- 국토이용 관리법 제33조의 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동법시행 규칙 제40조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벌칙제정의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조례 상호간에도 저촉되지 아니하였음.

※ 우리군의 토지거래 제한현황

- 토지거래 허가지역 : 논산읍, 연무읍(녹지지역에 한함), 상월면, 연산면, 벌곡면.
- 토지거래 신고지역 : 상기 읍면을 제외한 읍면